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지정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www.jejubokji.net

법 상 사 례 집

(2023. 1. ~ 12. 상담사례)

법률상담 사례집

01

‘제주복지넷’ ‘제주복지콜’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 전문상담 코너 이용방법	6
‘제주복지콜’(1833-9514)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7

02

상담사례

사회복지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10
가족의 빚에 대한 공동의 책임 여부	18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	20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22

성년후견제도	24
북한이탈주민	26
다문화	34
폰트 무단 사용	40

03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44
용어정리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46
개인회생제도	50

‘제주복지넷’ ‘제주복지콜’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
전문상담 코너 이용방법

‘제주복지콜’(1833-9514)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제주복지콜 1833-9514
www.jejubokji.net



전문상담 코너 이용방법

법률상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등 법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제주복지넷’(jejubokji.net)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상담내용(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을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노무상담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분야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제주복지넷’(jejubokji.net) 접속 후 ‘노무상담 게시판’에 상담내용(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임금관련 등)을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확인 후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영양상담

사회복지현장 또는 일상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 만성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해 영양 공급, 식생활 개선 또는 식습관 등과 관련하여 영양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제주복지넷’(jejubokji.net) 접속 후 ‘영양상담 게시판’에 상담내용(조리실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관리, 안전사고 예방, 개인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남겨주시면 영양사가 확인 후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1833-9514 제주복지콜’로 연락 주시면
변호사, 노무사, 영양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연계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제주복지콜 (1833-9514)

제주도민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화, 채팅,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문상담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사례

Q&A

사회복지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가족의 빚에 대한 공동의 책임 여부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성년후견제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폰트 무단 사용

제주복지콜 1833-9514

www.jejubokji.net



Q1

폭력 및 폭언

사회복지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담사례 Q&A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언·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이 가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방문요양’ 서비스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덕 어르신께서 마늘 껍질을 까라고
요구하셔서 한 두번 정도는 선의로 해드렸는데 방문할때마다
자꾸 집안일을 시키십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거절하면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폭언과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폭언 및 폭행으로 종사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2로 전화를 한 경우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문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존기간이 1년이므로 향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발급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및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 및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지만, 행위의 주체가 피해자나 아니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고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구 게시,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Q2 업무방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담사례 Q&A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이용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사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퇴소일이
도래했음에도 퇴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1인 시위를 하며 지속적으로
시설로 전화를 하고 시청, 도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기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역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긴 이용자가 담당자나 사무실을 찾아 항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업무의 중요한 수단인 전화 통화가 지나친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

사례

시설이용자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하였다며 신고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신고되는 허위사실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의 심판기능이 적정히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의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써,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신고내용 일부에만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허위 신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고되는 허위사실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서면이나 구두로 한 신고가 모두 해당하지만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조사관,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Q4 동의 없는 녹음

사회복지시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담사례 Q&A

타인과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작동시켜
몰래 녹음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사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동의없이
상담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고 타인 간의 녹음은 불법입니다. 즉,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17조 역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과 사생활 영역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며, 위반시에 무거운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과 전화로 통화 하면서 녹음을 함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버튼을 눌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을 규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화통화 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하는 녹음이 적법한 경우에도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판결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족이면 그 빚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사례

A에게는 성인인 자녀 B가 있는데 몇 년째 소식이 없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A는 B가 매우 비싼
최신형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였고, 통신요금과
기기대금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B의 주민등록이 아직 A의 집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B의 각종 채무에
대한 통지서가 집으로 오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지서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A는 본인 통장이나
집에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A

가족관계에 있을지라도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음

A는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
금액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을지라도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라도 가족이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음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통신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A에게 독촉을 반복하거나
A의 재산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다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자가 행한 것이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6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 처리

상담사례 Q&A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어르신이 사망하면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런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례

사례관리 대상자인 어르신께서는 돌봐줄
가족도 없고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사망 절차를 진행
중에 거주하시던 집의 보증금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 남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면 적든 많은 재산 혹은 빚을 남기게 됩니다. 민법의 상속 제도에 따라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시점에서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식, 형제·자매나 친척이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4촌까지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나 형제·자매가 없이 사망하는 사람의 재산은 그의 삼촌 혹은 사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살던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상 상속인의 부존재를 대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1년 정도 상속인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며, 그래도 남는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의 **특별연고자**란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양로원이나 병원 등의 단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사례

부 (A)와 모 (B)가 이혼하며

미성년자녀 (C)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부나 모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의사결정은 친권을 가진 한
사람만 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호주제도 폐지, 가족증명제도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

호적이라는 표현은 아직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호적이라는 용어는 2008년 호주제도의 폐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에 따라 증명서로 발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이 두 가지 외에도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명서는 다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출력되는 내용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데, 형제나 자매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사망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의 자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친권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 그 중에서도 상세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이혼한 A와 B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혼여부나 친권에 관한 사항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C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서 친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생활비와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례

사례관리 대상자 어르신께서 치매환자이신데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신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이 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결정 권한을 대행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자, 즉 후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이 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결정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법의 후견 제도는 5가지가 있는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 후견이 필요한 대상자(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놓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후견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당장 필요성이 없더라도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자녀나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 (발달장애인, 치매고령자, 정신질환자)에게는 공공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공후견제도 :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탈북 후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등록시 북한에서의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사례

북한에서 결혼한 이후 혼자 탈북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북한의 남편과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시 북한에서의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A

반드시 기혼 사실을 밝혀 북한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함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혼자 한국에 온 경우, 북한에서의 결혼은 유효하므로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은 하나원에 있을 때 일괄해서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므로 조사과정에서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면,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북한의 배우자를 누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배우자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북한에서의 혼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남한에서 한 나중의 혼인이 중혼이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 북한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10 탈북 후 가족관계(이혼)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북한에 남편을 두고 혼자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의 남편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통일부에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발급 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통일부에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이혼소장 ②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은 재북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Q11 탈북 후 배우자(외국인) 등록

탈북 후 배우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사례

탈북 후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한국에는 혼자만 왔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에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새로이 국제결혼을 하여야 함

중국에서 한 혼인등기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남편과 **새로이 국제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중국 호구를 사거나 위조된 호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그 호구는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것이
본인 명의로 된 호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호구를
이용하여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Q12 탈북 후 자녀의 국적 취득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례 Q&A

탈북 후 자녀의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사례

탈북 후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낳았는데 한국에는 혼자만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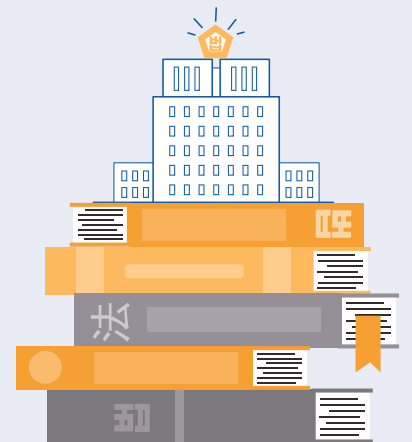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할까요?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헌법 및 법률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모자관계는 출산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혼인관계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생부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는 먼저 중국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후에 생부가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법무부에 국적취득신고(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특별귀화신청(성인인 경우)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13 탈북 후 재산 상속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례 Q&A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저는 탈북하여 한국에 있습니다.

북한에 자녀가 남아 있는데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재산 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음

북한 주민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을 받은 경우, 권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유증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속·유증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나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북한 주민 또는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북한 주민 또는 친족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북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경우, 북한주민 또는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에 북한 주민이 직접 상속·유증재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Q14 귀화허가 기준

다문화

상담사례 Q&A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주여성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에 불법체류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귀화 불허가 처분

귀화를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국적법 소정의 귀화요건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 또는 3년 이상이 되어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의 체류기간 요건을 채웠더라도 불법체류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었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Q15 귀화 과정

귀화 과정에서 품행단정을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사례

다문화여성입니다.

기소유에 및 불기소 처분과 같은 수사경력 자료도 귀화 과정에서 품행단정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나요?

A

범죄경력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평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모두 **품행이 단정할 것**을 공통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품행단정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경력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평가하고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기소유에 및 불기소 처분과 같은 수사경력 또한 품행단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품행이 불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의 내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서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16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귀화 과정에서 평가하나요?

사례

귀화를 신청한 다문화여성입니다.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A

품행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화 불허가 처분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는 귀화 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긴 경우나 자진출국 의사표시 후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품행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고, 친척 허위초청 알선행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통고처분을 수회 받은 경우도 품행 단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두 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 중 한 명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례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처 명칭 변경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귀화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Q17 혼인의 진정성 판단

다문화

상담사례 Q&A

혼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례

다문화여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귀화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의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실제로 함께하는지,
배우자의 가족과 왕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혼인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귀화신청을 한 외국인과 배우자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함께 동거하는지, 배우자의 가족과 왕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실제로 동거하지 않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들 사이 왕래가 없는 경우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그 경위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처음에는 위장결혼이었지만 후에 진정한 혼인관계를 이어간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①중국으로 출국한 배우자의 소재지, 연락처, 배우자 자녀들의 학교 관계를 모르고, 귀화신청자의 체류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사안 ②허위 혼인신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판결(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③미동거 및 미왕래 ④위장결혼의 대가로 사례금까지 지급한 경우 ⑤만남의 경위 불일치,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안 ⑥혼인공동생활(부부생활)에 대한 불일치 ⑦가정 전반의 경제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 ⑧실질 혼인 생활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진술도 불일치하며, 이혼사유에 대한 귀책사유 역시 불분명 사안 등이 있습니다.

Q18 폰트 무단 사용

폰트 무단 사용

상담사례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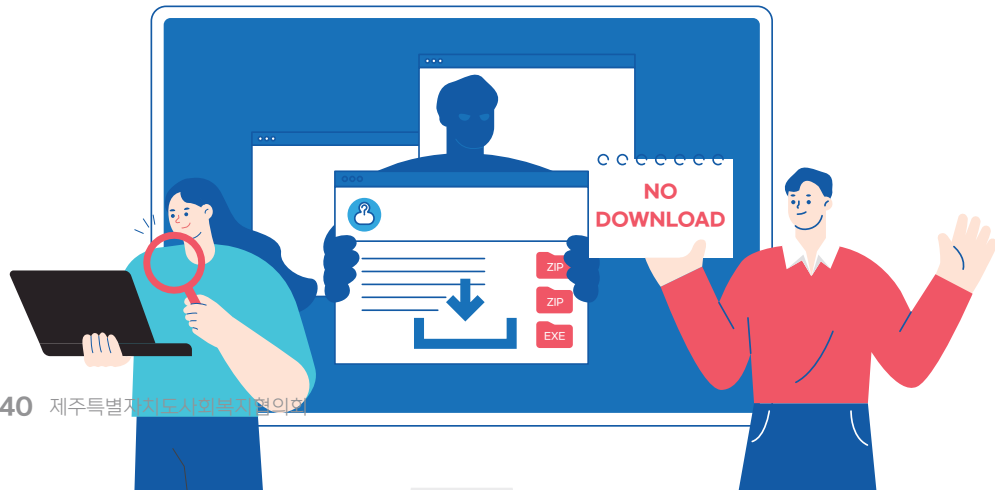
폰트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다운받아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폰트 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정품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을 경고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저작권법에서는 글씨체를 디지털화 한 폰트 파일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외주 업체를 통한 제작 혹은 일회성으로 제작한 인쇄물 등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글씨체를 디지털화 한 폰트 파일도 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폰트 파일에 대한 것이지 폰트 그 자체 즉, 서체가 인쇄된 글씨체 자체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폰트 이미지나 도안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외주 업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된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무단 사용의 고의가 없음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는 점 및 고액의 정품 구입이나 합의금 지급의 의사는 없음을 회신하는 정도의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회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회신을 하지않음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03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및 용어정리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

제주복지콜 1833-9514

www.jejubokji.net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꼭 알아야 할
법률상의 기간들
상담사례 Q&A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게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한 권리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B가 등기 우편을 받았을 경우, B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B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A가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대표적인 기간들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민사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만 1심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심에 대한 불복에도 동일합니다. 위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2주였음은 알아보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민사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2주의 기간**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소장 받은 피고

판결서 송달
2주 이내 항소

1심 판결 불복 시
*2심 불복에도 동일

정본을 송달
2주 이내 신청

이의 신청 시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 없이 바로 가벼운 처벌을 정하고자 하는 **약식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상고를 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 상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찰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으로 **항고**가 가능한데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제도

타인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가지는 상식이겠지만 법은 그에 대한 예외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법적 절차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갚지 않거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다시 출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01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지가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02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들

법원에서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이행의 책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용어정리



03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기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

면책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들

법원에서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제도

01

개인회생제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미리 정해서 3~5년동안 매월 성실히 이행하면 그 외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절차입니다.

02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변제계획안상 갚게 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03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과 미리 정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통상 **3년(36개월)**이며 약속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연락처 064-702-3784 홈페이지 www.jejubokji.net

디자인 4point4Design[포인트포디자인]

※ 본 사례집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황인철 변호사(변호사 황인철 법률사무소)님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